

K-SDGs 작업반 초안에 대한 〈교육그룹〉 입장 보고서 (안)

- 제출일시 : 2018. 5. 31
- 제출단위 : K MGoS 교육그룹
(그룹대표: 황상규)

1. 점검의 방향과 원칙

1) 점검 방향

- <교육그룹>은 2018년 K-SDGs 초안을 검토함에 있어, 이 사안이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2006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환경, 사회, 경제분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논의와 그 맥락이 연결된다고 보고 있음.
- K-SDG 작성 작업은 <UN SDGs>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과 기존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논의 결과를 동시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수정·보완·추가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2) 점검 원칙

- 이에 아래와 같이 3가지 점검 원칙에 따라 검토 의견을 제출코자 함.

1) 비교가능성

- 유사한 이슈에 대한 지표는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함. 이는 국제 지표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비교와 소통과 통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함.

2) 일관성

- 2006년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해 온 바, 논의 및 지표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3) 대표성

- 지표는 그 분야의 이슈의 본질과 개선방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채택하여야 하며, 다양한 지표를 나열하기 보다는 이슈의 본질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핵심적인'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2. 17개 K-SDSs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입장보고서(초안) 템플릿에 대한 의견

1. 목표

1) 필요성과 의의

==> 대체적으로 동의

2) 현황과 쟁점

==> 기존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논의 맥락 유지 필요

2. 세부목표

1) 세부목표에 대한 입장

2) 수정 보완 추가할 세부목표 제안

==> 세부목표는 가급적 UN SDGs 의 169개 세부목표 체계를 따르되, 국내 상황에 맞추어야 할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3. 지표

1) 지표(안)에 대한 입장

2) 수정 보완 추가할 지표 제안

==> 지표는 가급적 UN SDGs 의 241개 지표를 따르되, 국내 상황에 맞추어야 할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동시에 K-SDGs 핵심지표는 기존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84개 지표를 포함하여야 함.

※ 점검 근거 자료는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2016.8) 134~155p. 참고

4. 목표별 연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

==> 대체로 동의함.

2) 17개 K-SDGs 세부목표, 지표에 대한 의견

□ SDGs 1번 (빈곤감소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1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노인의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상대빈곤율(전체, 연령집단별)
1-2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3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의 비중
1-4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현상,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 기초연금 및 최저연금의 급여수준 ○ 실업급여 순대체율 ○ 하절기 온열질환자수 ○ 자연재해별 사망 및 상해
1-a	한국의 중점협력국에게 모든 측면의 빈곤 종식을 위한 자원을 보장한다.	○ 중점협력국 GDP 대비 공공사회보장지출, 공공보건·공공부조 지출 비율 ○ 중점협력국 하루 수입 1.25달러 미만, 1.9달러 미만 빈곤층 비율 ○ 중점협력국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1-b	아시아 개도국 빈곤층에게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인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아시아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견고한 정책들을 설계한다.	○ 상대빈곤율(전체, 연령집단별)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1-1, 1-b 지표에 상대빈곤율이 반복 기재되어 있음. 10-1에도 빈곤율 있음.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형평성-1-1빈곤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등 모두를 위해 모든 곳에서 극심한 빈곤을 종식	1.1.1 국제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도시/농촌)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리적 위치별)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의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별 및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1.3 모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적보호 최자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비율 (성별,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신부/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소외계층별)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개발하고, 기후와 관련된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	1.4.2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가지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실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전체 성인의 비율(성별, 및 보유형태별)
		1.5.1 인구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5.2 국제 GDP와 비교해서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게 모든 차원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증진을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자원의 동원을 보장	1.5.3 국가 그리고 지방수준에서 재난 위험 축소 전략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a.1 정부에 의해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자원의 비율
	1.b 빈곤종식 활동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성	1.a.2 정부의 총 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1.b.1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문으로 지출되는 정부의 반복적인 자본의 지출 비율

□ SDGs 2번 (기아 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2-1	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2-2	영유아·아동(유소년)의 적절한 영양 섭취 수준을 달성한다	○ 영유아·아동 영양 상태
2-3	효율적인 농업자원 활용을 통한 실질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영농규모별 노동생산성 ○ 영농규모별 단위면적당 실질 농가소득
2-4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2-5	종자, 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및 동물유전 ○ 가축 지방품종의 비중
2-a	최빈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 생산자지지 추정치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PSE
2-b	세계농업시장에서의 건전한 무역 질서 확립과 왜곡현상 시정을 위해 노력한다	○ 수출보조금 ○ 농업부문에 지출되는 총 공적자금 (ODA) 흐름
2-c	정부 개입을 통해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 식량가격 이상치 지표
2-d	적정량의 재료 사용과 균형잡힌 식단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토지-2-1 농업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2. 기아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개선의 달성 및 지속가능 농업 강화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1.1 영양 부족 현황(POU) 2.1.2 식량 불안 경험 척도(FIES)를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있는 인구 현황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2.2.1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연령대비 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2.2.2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 (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 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가	2.3.1 노동단위당 생산량(농업, 축산업, 산림업 사업체 규모별)	
	2.3.2 소규모 식량 생산업자의 평균 소득(성별, 토착상태별)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경영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 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을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정부 지출의 농업 편향 지수	
	2.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2b 도하개발라운드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 수출보조금과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모든 수출조치에 대한 병행적 제거를 통해 전세계 농산물 시장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시정하고 예방	2.b.1 생산자 지원 추정치	
	2.b.2 농업 수출지원금	
2c 식료품 시장과 시장 파생상품의 적절한 기능을 확보하고 극심한 식량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식량비축분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선택	2.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IPA)	

□ SDGs 3번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70세 사이에서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사망률; 자살률(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되는 인구의 비율, 재난적인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받는 가구의 비율
3-2	정신건강증진 및 약물오남용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10만명당 자살률 ○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섭취량 ○ 알코올의존 및 약물남용자를 위한 치료지원(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추구관리서비스 등)의 수혜정도
3-3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애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사망자수(인구1,000명당) ○ 사고로 인한 손상 사망자수
3-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발생률(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 B형간염 양성률
3-5	모성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아 10,000명당 산모의 사망률(MMR) ○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한 출산의 비율 ○ 청소년 출산율(10-14세, 15-19세) ○ 가임여성(15-49세)의 현대적인 피임법을 충족하는 수요
3-6	아동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사망률 ○ 5세이하 유아 사망률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건수 감소	
3-8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케어 관련 정책목표와 지표 (임종관리, 호스피스 등)	
3-9	보건부분 이행수단 목표 개발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건강-2-5건강관리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3. 건강 및 웰빙	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생명 출산 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1 산모 사망률(MMR) 3.1.2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생명출산의 비율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산생아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12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5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25명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예방 가능한 산생아와 5세 이하 유아 사망 종식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3.2.2 산생아 사망률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 등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 등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에이즈 감염자의 수 (연령별, 성별 및 주요 인구별)
		3.3.2 연간 1,000명당 TB(결핵) 발병건수
		3.3.3 연간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건수
		3.3.4 해당 연도 내 인구 10만 명당 신규 B형 간염 감염자수
		3.3.5 소외열대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 수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만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진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4.2 자살로 인한 사망률
	3.5 마약 및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을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남용 장애 치료 (의약,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3.5.2 국가별 상황에 따라, 주어진 회계연도 안에 (15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1인당 순 알코올 리터 소비량으로 정의되는 알코올의 해로운 이용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 및 상해건 수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목적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전략 프로그램에 통합을 보장	3.7.1 현대화된 방식의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임신 가능한 연령대(15~49세) 여성의 비율
		3.7.2 동일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청소년 (10-14세, 15-19세) 출산율
3.8 재정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며 적당한 가격의 양질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 달성	3.8.1 일반 대중과 가장 취약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임신, 모성, 산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전염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추적개입을 기초로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의 보장으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 서비스 범위	
	3.8.2 인구 1,000명 당 건강 보험이나 공중 보건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인구 수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3.9.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안전하지 않은 WASH 서비스로 인한 사망률	
	3.9.3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의한 사망률	
3.a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인구의 연령대별 현황	
3.b 주로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혹은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유연성에 관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상의 조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및 공중보건 도하선언에 따라 적당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하고 특히 모두를 위해 의약품 제공	3.b.1 적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및 백신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총 순 투자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 도서 개도국에서 보건 재정과 보건인력 모집, 양성, 훈련 및 유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3.c.1 보건근로자 밀도 및 분포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조기 경보, 위험 감소, 국가적 혹은 국제적 보건위험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 보건 규정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 대처능력	

□ SDGs 4번 (교육)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의 최소 숙달 수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의 성비 ○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학습평가 실시 법정 ① 무상 ② 의무 초·중등교육 연한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이수율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학입시 제도 운영 현황 ○ 계열별 성별 고등교육 입학자 현황(성비) ○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2) ○ 기업이 대졸사원에 대한 직업역량 및 직무역량 만족도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3) ○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재원별 상대적 비중 ○ 소득계층별 장학금 수혜율 ○ 학자금 대출 현황 ○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산학협력 중점 교수(전임교원) 확보율 ○ 공개강의 현황
4-4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수요자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적합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취업과 창업 등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가진 청소년, 성인 등(구직자 및 재직자 포함) 비중을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 ICT 산업·직종 종사자 수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 청소년/성인 문해율 ○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4-7	세계시민교육의 증진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4-a	기술변화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4-b	포용과 사회통합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4-c	생애단계별 직업교육훈련 지원 체제 구축	
4-d	청소년/성인의 정보통신기술(ICT) 능력 강화	○ 문제의 인식 등 (보고서 참고 필요)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위 4-3의 경우, 지표수가 과도하게 많음. 우선 순위 고려하여 핵심지표와 참고지표로 나누어 관리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교육-3-1교육수준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S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4.1 2030년까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보장	4.1.1 (a) 초등학교에서 3/2 이상을 마친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i) 읽기 및 (ii) 수학에서 최소한의 숙련도를 보이는 중학교 졸업학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비율 (성별)
	4.2 2030년까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소녀와 소년들이 양질의 조기 아동개발, 보육, 그리고 초등학교 사전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행복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성별) 4.2.2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기 전 한 해 동안) 체계적 교육에 대한 참여율(성별)
	4.3 2030년까지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적당한 양질의 기술, 직업, 그리고 고등교육에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성별)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혹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가진 청소년/성인의 비율(능력유형별)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동등한 접근 보장	4.5.1 (여성/남성, 농촌/도시, 부의 하위/상위 20% 및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피해자 등 기타: 데이터가 제공되는 기준에 의한) 동등성 지수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 및 남녀 성인 상당 수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	4.6.1 해당 연령대 중 기능적인 능력 즉, (a) 독해 및 (b) 산술 능력에서 적어도 특정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구의 비율(성별)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함에 대한 공감대를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	4.7.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4.a 아동, 장애 및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세우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효과적 학습환경을 제공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 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선된 교육기반 시설 및 자원 (e) 기본적인 식수 시설; (f) 성별로 구분되는 기본적인 위생시설 그리고; (g) WASH 지표 정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에 접근 가능한 학교의 비율
4.b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 공학, 과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고등 교육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장학금 수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4.b.1 장학금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의 규모(분야 및 연구 형태별);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의 교사연수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의 공급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4.c.1 (a) 유치원교육; (b) 초등교육 (c) 중등교육; (d) 고등교육 교사 중에서 해당 국가에서 해당 수준의 수업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체계적인 교사연수(예: 교육 훈련)를 사전에 혹은 재직 중 받아 본 적이 있는 교사의 비율	

□ SDGs 5번 (양성평등)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5-1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부부폭력비율 ○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의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5-4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 육아휴직사용 성비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1) 여성의 성적 주체성 확립을 위한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2) 계획 임신과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피임 및 관련 상담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3)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의료적 접근 강화를 통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 4)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개선 5)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점검 실시 6) 성과 재생산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 ○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 ○ 학교 성교육 만족도 ○ 성적 자기결정권 ○ 피임 실천 ○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 ○ 성건강 관련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계,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b) 총 토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보유율 - 성별 및 연령 ○ 여학생 이공계 진학률 ○ 이공계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으로 지표수가 과도하게 많음. 우선 순위 고려하여 핵심지표와 참고지표로 나누어 관리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5-5의 세부목표 내용은 현황과 쟁점 등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음.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형평성-1-3 남녀평등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5. 양성평등 달성 그리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 지 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5.2.1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5.3 아동 결혼, 조혼, 강제결혼, 그리고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형태의 유해한 관습 제거	5.3.1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의 여성들의 비율
		5.3.2 여성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 (연령별)
	5.4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그리고 사회적 보호정책의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정내 가족의 책임분담을 유도함으로써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	5.4.1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 (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5.5 정치, 경제, 그리고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그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서 합의한 대로 성 및 임신 보건과 임신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15-49세 여성에게 성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5.a 국가의 법률에 의거해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주고, 토지나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 (보유기간별)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용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증진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 (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양성 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 SDGs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6-1	물 안전 관리기법(Water Safety Plan)의 도입	○ WSP수립율(%)
6-2	2030년까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면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양질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한다.	○ 농어촌 공공 하수도 보급률 ○ 개인하수도 공공관리 비율 ○ 하수 악취저감률
6-3	2030년까지 물순환 개선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 대폭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 상수원 수질 좋음(I) 등급(BOD,총인 기준) 달성 비율 ○ 전국 수체의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B) 등급 비율 ○ 국민 물환경 체감 만족도 달성률
6-4	공급된 용수의 누수량 저감	○ 누수율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 정부 주도의 지출 계획의 일부인 물 및 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 금액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6-1~6-4처럼 큰폭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6-3 하수처리 관련은 UN SDGs 3.9 건강,웰빙에도 있어서 중복 체크 필요.
- 6-b 누락 등 세부목표 체계, 지표 체계는 가급적 UN SDGs 포맷을 유지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담수-4-1 수량, 4-2 수질, 사회-건강-2-4 식수 등을 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6.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에 대한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금지	6.2.1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폐수의 비율
		6.3.2, 양질의 주변 수원을 갖고 있는 수역의 비율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6.4.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사용 효율성의 변화 비율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자원의 부분으로서 담수의 취수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물 자원 관리 이행	6.5.1 통합 수자원관리 (WRM) 이행 정도 (0-100)
		6.5.2 물 협력을 위해 운용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경 유역의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범위의 변화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구축지원을 확대	6.a.1 정부 주도의 지출 계획의 일부인 물 및 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 금액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6.b.1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 SDGs 7번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7-1	2020년까지 전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	○ 지능형 계량 시스템 보급률
7-2	2030년까지 에너지빈곤층의 비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인다.	○ 전체가구에서 에너지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
7-3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증대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최종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7-a	한국이 수행하는 국제개발지원(ODA)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개선, 청정석탄화력기술의 지출 비중 확대	○ 우리나라의 ODA 지출 중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전력송배전 사업 지출 금액과 비중
7-b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보다 청정한 석탄화력기술 개발에서 국제협력연구 확대	○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청정석탄화력기술 부문 연구 국제협력 예산의 전체 에너지부문 국제협력 비중 ○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청정석탄화력기술 부문의 국제협력연구에서 개도국의 비중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경제-소비생산-2-1에너지사용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7. 모든사람에게 적당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	7.1 2030년까지 적당한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7.1.2 주로 청정연료 및 기술에 의존하는 인구비율
	7.2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7.2.1 에너지 소비의 최종단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2배로 증대	7.3.1 1차 에너지와 GDP의 측면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약도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향상된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	7.a.1 약속한 1천 억달러 투입에 대해 2020년부터 실제 동원되는 연도별 금액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 그리고 내륙개도국에 각국의 자원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	7.b.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과 기술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해외 직접 투자금액과 에너지 효율성투자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SDGs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8-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 연간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8-2	기술적 향상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제고	
8-3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	○ 비농업부문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 비율
8-4	자원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파괴 비동조화	○ 물질 발자국 ○ 국내 물질 소비량
8-5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달성	○ 비농업부문에서 비공식성별취업비율 ○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
8-6	청년 실업률 감소	○ 청년 고용률(실업률)
8-7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8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증진	○ 산업재해 발생 비율(성별 및 이주 신분별)
8-9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 개발 및 이행	
8-10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와 금융접근성 제고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8-a	개도국 무역지원을 위한 원조 강화	
8-b	청년 고용을 위한 전략 수립과 세계 고용 협약 이행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세부목표 내용을 축약했는데, ,가급적 full text 사용으로 충분한 의미 전달 필요.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형평성-1-2-노동분야 지표와 경제-경제구조 -1-1-경제이행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8-2 지표, 8-7 지표, 8-b 지표 등 칸이 비어 있는데, UN SDGs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S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8. 모두를 위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을 유지	8.1.1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2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부문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다변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3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독려	8.3.1 비농업부문으로의 비공식 취업 비율 (성별)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소비와 생산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약화로 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	8.4.1 재로 발자국(=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8.4.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8.5.1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 수당 (직업별, 연령별 및 장애인별)
		8.5.2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 5-17세 아동들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별)	
8.8 이주 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빈도 비율(성별 및 이주자 상태별)	
	8.8.2 국제노동기구(ILO) 원문과 국가 법 조항에 의거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을 준수하는 국가의 증가(성별, 이주자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전체 GDP와 성장률 중 관광 직접 GDP 비율	
	8.9.2 전체 일자리 및 일자리 성장률 중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의 수(성별)	
8.10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독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8.10.1 성인 100,000명 당 상업적인 은행 지점들과 ATM의 개수	
	8.10.2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거나 개인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15세 이상) 성인 비율.	
8.a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강화된 통합체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 원조 지원의 증대	8.a.1. 무역거래 및 대금지급 원조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국가예산 및 GDP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총 지출액	

□ SDGs 9번(산업·혁신·인프라)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9-1	다수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성장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접근성 ○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 소비 비중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산업 부가가치 중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화 기술의 순수출 규모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이러한 성과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연구개발비
9-5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고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a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타국가에 대해 발전경험 공유, 금융, 기술 등 전문적 지원을 통해 전 국가적인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발전 촉진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지표 체계 또한 UN SDGs 지표를 반영하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9-b, 9-c 누락.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경제-정보화-3-1,3-2,3-3정보접근,정보인프라,과학기술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9. 혁신과 인프라	9.1 모두를 위해 적당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경제개발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초국경적 사회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개발	9.1.1 사계절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 인구의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용과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증대하며, 최빈개도국의 경우 그 비율을 2배로 증대	9.2.1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산업과 기타 기업이 적당한 신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을 증진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9.3.2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역량에 따라 조치를 취해, 자원효율성이 높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부여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백만 명 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9.5.2 거주자 백만 명당 (플타임에 준하는) 연구원 수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국들,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기반시설에 지원되는(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자금을 합한) 공식적인 국제적 자원 총액	
9.b 산업 다변화, 상품가치를 더 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9.b.1 총 부가가치 중 중,고급 기술 산업 부가가치의 비율	
9.c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늘리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9.c.1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기술별)	

□ SDGs 10번 (불평등 완화)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0-1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 빈곤율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여부 혹은 여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 증진한다.	○ 소득격차비율(또는 빈곤격차비율) ○ 소득 5분위 배율 ○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유무 등) 빈곤율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의 불평등을 줄인다.	○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유무 등) 고용율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변경과 생략이 많이 되어 UN SDGs 제정 취지를 살려 재검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0-1에도 빈곤율의 경우, 세부목표 관련성이 있는지 재검토 필요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형평성-1-1-02)소득불평등 지니계수 등 관련 지표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률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 및 유지	10.1.1 하위 40% 인구 및 총 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인별)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그리고 조치를 강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소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10.4 재정,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확대를 달성	10.4.1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10.5 세계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	10.5.1 재정 건전성 지표
	10.6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책임있는 합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	10.6.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통해 질서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촉진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a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대우 원칙 이행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10.b 국가별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서도서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와 자금 거래를 독려	10.b.1 개발을 위한 자원투입 총액(예: 공적개발원조,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거래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비용이 5%를 넘는 송금경로를 제거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	

□ SDGs 11번(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건 수 및 국제적인 등위
11-5	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	○ 인구 100,000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생활 및 기타 폐기물 관리 등을 주시한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1인당 환경영향을 감소	○ 초미세먼지(PM2.5)농도 기준 초과 일 수
11-a	계획을 통한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	○ 도시·군기본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통합관리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
11-b	통합적 재난위기관리체계 구축	○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도시 비율 ○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11-6 의 경우, 고형폐기물과 도시 미세먼지 지표 등은 환경분야 지표이면서, 도시 공동체 관리 지표임에 유의하여 배치 필요.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대기-1-3대기질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자연재해의 경우, 사회-재해안전 분야 관련이라, 지표의 교차 검토(cross check)가 필요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1. 지속가능 도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당한 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도로안전을 개선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대한 접근을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별, 성별 및 장애인별)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 인간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 소비 비율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국가문화·자연 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예산의 비율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0,000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하면서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1인당 환경영향을 감소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고형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 11.6.2 도시 미세먼지(PM2.5초미세먼지와 PM10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에 따른 가중)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지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연령, 성 및 장애인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 장소별)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를 지원	11.a.1 인구 추계와 자원 수요를 통합하는 도시 지역 발전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도시 크기별)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재난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 계획을 채택, 이행하는 도시와 인간 거주지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하고, 2015-2030 센다이 재난위험감축체계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 관리를 개발하고 이행	11.b.1 센다이 재난위험감축체계 (2015-2030)에 따라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 정부의 비율 11.b.2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을 갖춘 국가의 수
	11.c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가진 건물을 짓는 데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최빈개도국을 지원	11.c.1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재정 지원 비율

□ SDGs 12번(지속가능한 생산·소비)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2-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 수립 및 이행	○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12-2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전과정 자원효율 관리 기반 구축	○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 국내 자원 소비량(DMC), 1인당 자원소비량 ○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1/2로 감소하고 식품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양 감소	○ 식품 손실 지표(Food Loss Index) ○ 식품 폐기물 지표(Food Waste Index)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한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 예방	○ 화학물질 관련 국제환경협약 참여 당사자 수와 유해폐기물 발생량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64%
12-6	지속가능경영 활동 노력과 성과 및 계획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파악 및 발간 기업 확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수
12-7	녹색 공공조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활성화	○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12-8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	○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율
12-a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지원 강화	○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지원되는 금액
12-b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	
12-c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검토 의견 >

-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감안하여 누락없이 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에 최대한 부합하게 해도 될 듯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로 보면, 곳곳에 관련 지표가 흩어져 있는 형국인데, 관련성을 한번 더 살펴 보면서 연계·보완하면 더욱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12.1 개발도상국의 개발역량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동에 참여하되 선진국이 주도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CP) 국가 실행 계획이나 SCP를 주류화 하는 계획을 국가정책 우선순위 혹은 세부목표로 갖고 있는 국가들의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재로 발자국(=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12.2.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식량낭비를 1/2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식량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 감소	12.3.1 세계 식량 손실 지수(GFLI)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체계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환경 다자 협약에 참여해, 각 규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전달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수
		12.4.2 1인당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유형별로 처리되는 유해 폐기물의 비율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재활용되는 다수의 물질
	12.6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채택하고,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주기에 통합하도록 독려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들의 수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12.a 개발도상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지향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을 모니터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가진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나 정책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	
12.c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수요와 여건을 고려 하면서, 빈곤층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상황에 따라 시장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정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	12.c.1 GDP 단위 (생산과 소비)당,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 SDGs 13번 (기후변화)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3-1	국내 모든 곳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위험수준(critical level)을 이상으로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반의 상대적 연평균 인명피해, 재해피해액, 피해복구액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비율/ 탄소포인트 지급액 ○ 자연재해 피해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비율/이행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 총예산(예산비율) ○ 민간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건수 및 이행실적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고 저탄소생활을 확산한다.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업 참여를 독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고취와 저탄소 생활 확산 ○ 기후변화 완화 및 감축 교육 ○ 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부합화의 사례로, UN SDGs 13.1.1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의 경우, '국가의 수'를 광역,기초 지자체의 수... 로 변경하면 좋은 K-SDGs 가 되지 않을까 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대기-1-1-기후변화 및 사회-재해안전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13.1.1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13.1.2 인구 100,000명 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13.2.1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을 기르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통합된 정책/전략/계획의 수립과 운용을 홍보하는 국가의 수 (국가 적응계획, 국가적으로 결정된 분담, 국가차원의 홍보, 격년별로 갱신되는 보고서 등)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1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를 1차, 2차, 3차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들의 수
		13.3.2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체계,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홍보한 국가의 수
	13.a 의미있는 완화조치와 이행에 관한 투명성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기금적 조속한 자금 출자를 통해 녹색변화기금의 온전한 운용을 위해서,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하겠다는 목표하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선진국 당사자의 공약을 이행	13.a.1 약속된 1천 억달러 투입에 대해 2020년부터 실제 동원되는 연도별 금액
13.b 여성, 청년, 그리고 지역 및 소외 공동체를 초점에 두고,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	13.b.1 여성, 청소년, 및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위해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최빈 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도국의 수	

□ SDGs 14번(해양생태계 보전)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 육상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감소 비율
14-2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 경제수역내 산란장 조사 정점(면적) ○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개소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의 수소이온농도(pH)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 확립 - 근해의 수소이온농도(pH) 모니터링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연안 연평균 pH 농도
14-4	과학적 자원조사·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수산자원관리 계획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의 비율 ○ 목표자원량 대비 현재 수산자원량의 비율
14-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14-6	국내 수산보조금의 영향 평가 및 체계 개편 수산자원 관리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IUU 어업 모니터링 통제 위한 자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UU 어업의 효과적 통제 및 감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자원 확보 - IUU 어업의 효과적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교육 자원 확보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위 지표 14-5 ...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은 이 항목과 관련성 없는 내용임.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해양/연안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4. 해양 생태계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지기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4.1.1 해안 부영영화 및 유동 플라스틱 잔해밀도 지수
	14.2 2020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양으로 만들기 위해 복구 조치들을 이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pH)
	14.4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 기간에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 e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종식하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의 비율
	14.5 2020년까지 현재의 과학적 정보를 기초로 하고 국가 및 국제법과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최소한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존	14.5.1 해양지역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적, 보고되지 않은,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수단을 이행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국가별 진전
	14.7 2030년까지 수산업, 양식업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관리를 포함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서도서 개도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해양건강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개발에 대한 해양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해양학위원회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 증대, 연구역량 개발 및 해양기술 이전	14.a.1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되는 전체 연구 예산의 비율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업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해 주고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정책/제도적인 기반을 실행 단계에서의 국가별 진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체계를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을 이행하는 법적,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대양 관련 수단들을 비준, 수용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 SDGs 15번(육상생태계)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육지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 임야 및 공원 통계자료 이용하여 목표치 대비 전용율 감소 정도(%) ○ 생태관광지역들에 대한 관광객 수와 지역의 관광객 수입 총액수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시키고,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조림을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진전(국제협약 국가보고 지표 개선비율과 보고의 완전성 평가 정도) ○ 산림생태계의 유형, 천이단계, 영급 등에 따른 산림 면적과 비율 ○ 산림경영율
15-3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는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황폐화 중립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토지 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 토지이용 유형별 면적과 비율 ○ 토양탄소량 변화 ○ 토지생산성(NPP)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전을 보장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생물다양성 등 산림생태계를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 산 녹색 보호 지수 ○ 목표치 대비 적합서식지 면적(%) ○ 전체 멸종위기종 중 복원 및 증식 종수의 비율(%) ○ 산림 생물다양성을 위한 핵심 산림 보호구역 지정 범위 ○ 산 녹색 회복 지수 ○ 산림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경영목적으로 지정한 산림 면적 ○ 국토 생태축 연결성 확대
15-5	자연 서식지 황폐화를 줄일 수 있도록 긴급하고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멸종위기종 보전관리 모니터링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규모의 적색목록지수(National Red List Index)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확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공평하고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평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종식하기 위해 조속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상품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다룸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 종식	
15-8	2020년까지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우선 퇴치종을 통제하거나 퇴치 생태계 교란 침입외래종 유입 방지 및 통제 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입외래종 유입 예방 및 통제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수단 집행 건수 ○ 침입외래종(병, 해충, 침입종)에 영향을 받은 산림면적과 비율 ○ 국내 생태계에서 제어된 외래종의 종수 ○ 지속가능하며 자연친화적인 외래종

번호	세부목표	지표
		박멸 및 제어 기술의 종류 개수
15-9	2020년까지 국가 및 지역별 계획, 발전과정, 빈곤감소전략, 회계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하고 반영	○ 2011-2020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대폭 확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기금, ODA 규모 확대	○ 국민총소득(GNI) 대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ODA 및 공공지출 증가율(%) ○ 멸종위기종 증식 및 복원에 기여한 친환경 기업의 지출
15-b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자원 조달을 위해 모든 수준과 영역에 걸쳐 상당규모의 재원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산림보존 및 재조림과 같은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	○ 생태계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역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생계 유지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생물다양성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S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위 15-4에서 제시한 다양한 지표들은 그 전체를 나열하기 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지표 1~2개를 우선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5. 육상 생태계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 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증립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총 토지 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15.4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생태계 보호	15.4.1 산 생물 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15.4.2 산 녹색 보호 지수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15.5.1 레드리스트 지수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보호대상 동식물 밀렵과 밀매를 종식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제품 수요와 공급 모두에 대응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5.8 2020년까지 외래 침입종 유입예방과 이들이 육지 및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우선순위를 통제하거나 퇴치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감소 전략에 통합	15.9.1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의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2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자원 동원하고 증대	15.a.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b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모든 수준과 모든 원천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자원을 동원하고, 보존 및 재조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동기를 제공	15.b.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계기회 추구 역량 증대를 통해 보호종의 밀렵과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국제적 지원강화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 SDGs 16번(평화, 포용, 정의, 책임있는 제도)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6-1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이 항목은 인권보호, 부패방지, 국가인권기구 규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제도화를 규정한 것으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교차 검토가 필요한 분야임.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분류에도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많으므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세부목표 설정 및 지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포용적인 제도구축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0,000 명당 의도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 (연령별 및 성별)
		16.1.2 인구 100,000 명당 분쟁관련 사망 (연령별, 성별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 심리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16.1.4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홀로 안전하게 걷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증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의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6.2.2 인구 100,000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중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인구 수; (성별, 연령별, 착취형태별)
		16.2.3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8-24세 여성과 남성의 비율
	16.3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고한 인구 비율
		16.3.2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고, 도난자산 회수 및 복구를 강화하여,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	16.4.1 국내 및 국외 불법 반입 자금의 총 가치 (현재 US달러 기준)
		16.4.2 국제 규범 및 법적절차에 따라 기록 및 추적되고 압수된 휴대용 소형 무기의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6.5.1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16.5.2 지난 12개월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인의 비율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의 비율 (부문별 또는 예산코드 및 이와 유사한 기준별)	
	16.6.2 공공서비스에 관한 가장 최근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	16.7.1 국가 전체적 분포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직 분포 비율(연령, 성별, 장애인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 및 인구 집단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출생시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연령별)	
16.10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무역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해, 납치, 강요된 실종, 임의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 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력 예방 및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관련 법규나 제도를 강화	16.a.1 파리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그리고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16.b.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연령별, 성별)	

□ SDGs 17번(파트너십)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7-1	개도국의 재원동원 역량화를 지원	
17-2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재원동원	
17-4	고채무빈곤국(HIPC)의 채무부담 완화(글로벌파트너십)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지증진체제를 수립 및 이행	
17-6 ~8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	
17-9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 및 국제사회 지원강화(글로벌파트너십)	
17-10	도하개발의제와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1	최빈국과 개도국의 수출 확대	
17-12	최빈국의 시장접근조치 확대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해 수립한 총괄기구 수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 일관성 가이드라인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17-1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할당된 금액(KOICA, EDCF, KSP 등 민관협력(PPP) 자원측정) ○ 공인된 민관협력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단체 수 ○ SDGs 민관파트너십 가이드라인 수립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회 수
17-18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으로 세분화된 국가 통계 구축 지원	
17-19	지속가능발전 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개도국 통계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역량 강화 목적의 공적개발원조 금액 및 비율(OECD DAC)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위 17-1~12 분야의 지표가 공란으로 있는데, UN SDGs 지표 참고하여 재구성 필요.
- <파트너십> 항목은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에서도 그다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 특히, 이 분야는 사회책임 국제표준 ISO26000 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거버넌스 구축 방법론 등이 연관되어 있어 있고, 각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임.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S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7. 파트너십	17.1 세금 및 기타 수익 징수를 위한 국내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자원 동원 강화	17.1.1 총 GDP 대비 정부 세수 총액(출처별) 17.1.2 국내세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국내 예산의 비율
	17.2 개발도상국에는 ODA/GNI 0.7%, 그리고 최빈개도국에는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수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이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의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	17.2.1 OECD/개발 원조 위원회(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1) ODA 순액의 비율 2) ODA 총액의 비율 3) LDC(최빈국)에 대한 ODA 비율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자원을 동원	17.3.1 총 국내예산 중 해외 직접 투자, 공적개발 원조 및 남남 협력의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미국달러기준)의 비율
	17.4 필요할 경우, 채권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해 고채무빈국의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채무상환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 촉진 체제 도입 및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남북, 남남, 삼각 형태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 및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UN 수준에서 현재 메커니즘간 조율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의 공유를 강화	17.6.1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협력 형태별) 17.6.2 거주자 100명당 고정 인터넷 광대역 가입률 (속도별)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17.7.1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배포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지원액 중 총 승인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	17.8.1 인터넷 사용자 비율	
17.9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을 통해,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발도상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	17.9.1 개발도상국으로의 (남북, 남남, 그리고 삼각 협력을 포함하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의 달러 가치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결론으로 세계무역기구 관리하에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며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17.11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17.11.1 전세계 수출 가운데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수출비중	
17.12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가능한 특혜원산지 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서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부합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시의적절하게 이행	17.12.1 개발도상국, 후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대쉬보드	
17.14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증진 하기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한 국가의 수	
17.15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여유와 리더십을 존중	17.15.1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소유의 성과체계 및 계획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속 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중 이해 당사자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지속 가능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이해당사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진전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
17.17 파트너십기관이 가진 자원조달 전략과 경험을 기초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독려 및 촉진	17.17.1 공공-민간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을 위해 약속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아주 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그리고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 개도국 등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7.18.1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완전 세분화된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 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7.18.3 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행 중에 있는 국가 통계 계획을 가진 국가의 수 (재정지원 출처별)
17.19 2030년까지 GDP를 보완할 지속가능발전 성과의 측정수단 개발을 위해 기존의 시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구축을 지원	17.19.1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한 한 번의 인구 주택조사를 진행했고, b)100퍼센트의 출생등록과 80퍼센트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3. 결론

1. 2018년 K-SDGs 초안을 검토함에 있어,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2006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논의와 맥락 아래에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
2. K-SDG 작성 작업은 <UN SDGs>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과 기존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논의 결과를 동시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수정·보완·추가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음.
3. 지표 검토 시에는 아래의 3가지 점검 원칙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 비교가능성 : 유사한 이슈에 대한 지표는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함. 이는 국제 지표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비교와 소통과 통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함.
 - 2) 일관성 : 2006년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해 온 바, 논의 및 지표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 3) 대표성 : 지표는 그 분야의 이슈의 본질과 개선방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채택하여야 하며, 다양한 지표를 나열하기 보다는 이슈의 본질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핵심적인'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4. 그동안 작업반에서 논의한 다양한 지표들 관련, 중요한 핵심지표는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끝>.